

2017년도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실시)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 계			47명	
	8급	간 호	간 호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 정	일반행정	27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일반행정 (장애)	2	
			일반행정 (저소득)	1	
		세 무	지방세	5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전 산	전 산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7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농 업	일반농업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시 설	일반토목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을 포함합니다.
- 9급 공채시험(일반행정·지방세·사회복지)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한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다. 시험 시간(필기시험)

시 험 명	계 급	과 목 수	시 험 시 간	배 점
공개경쟁 임용시험	8,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계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8급,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라.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 제한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계급	직렬(직류)	자격요건 (해당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 또는 충족)
8급	간호(간호)	조산사, 간호사
9급	전산(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9급	사회복지(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2017년 10월 25일 이므로, 201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청되어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수급자(보호자)증명서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동사무소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 : 10.20(금) ~ 10.25(수) <취소 : 10.20(금) ~ 10.30(월)>	필 기	12.7(목)	12.16(토)	'18.1.17(수)
		면 접	'18.1.17(수)	'18.2.7(수)~ '18.2.9(금)	'18.2.23(금)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서류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서류제출일에 서류 미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 1522-0660)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8·9급)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3.5cm×4.5cm의 jpg 규격이며, 용량은 1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불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입력 가능)
-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4)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12월 7일) 이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참고**)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9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①호와 ②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류별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함

가) 행정직군 분야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 직렬(직류)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사회복지)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나) 기술직군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2 자격증 일람표 참고)

구 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또는 의사상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합니다.
-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증서번호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4)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류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를 참고

8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이번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이며 전부 공개입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아. 필기시험에서 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타.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044-300-3074)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시험정보」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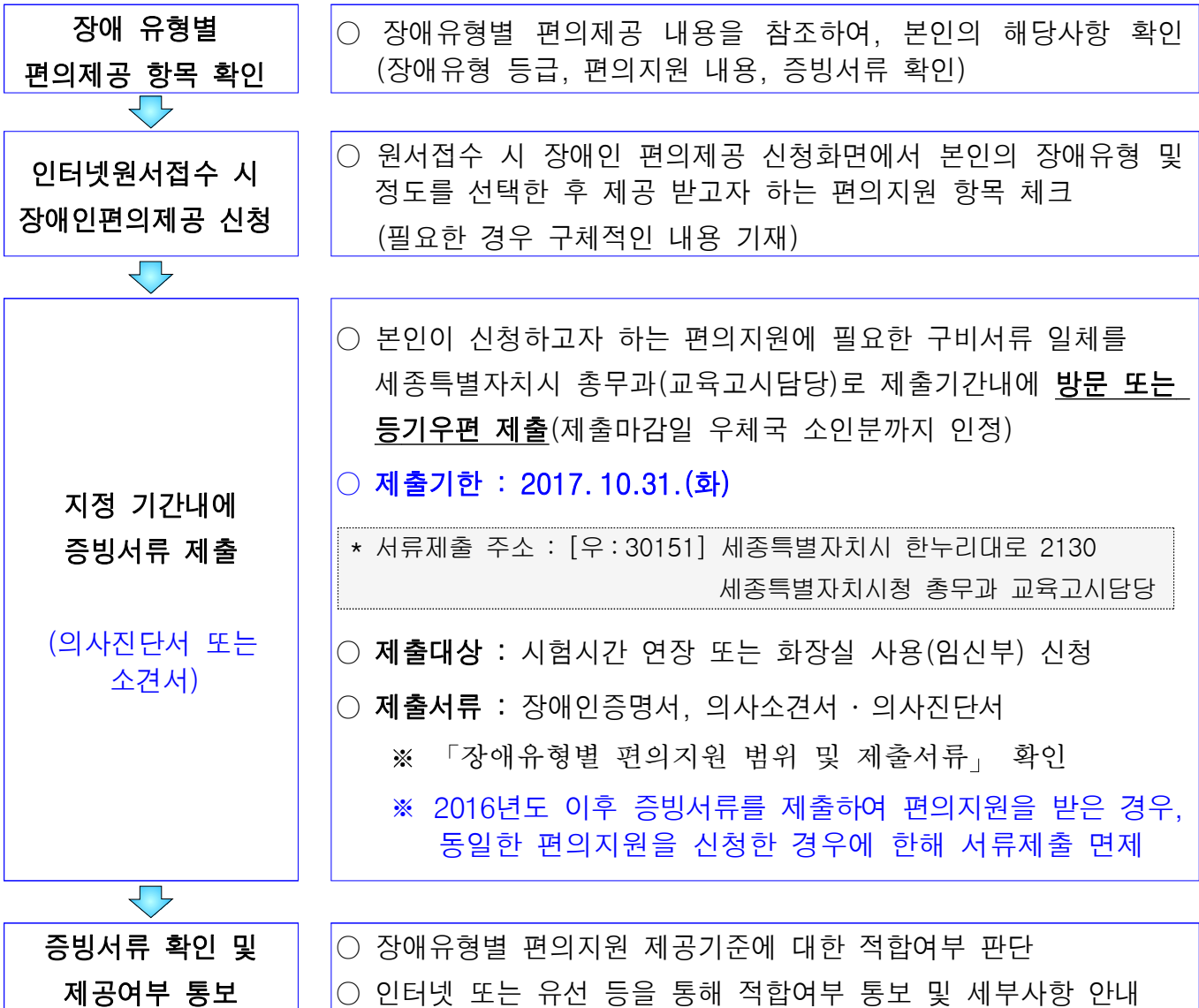
- ※ 붙임 :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2. 2017년도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

-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임신부)
 -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한해 제공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범위(항목별 선택)	증빙서류
지체장애	중증 상지지체 (1급 ~ 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없음
	경증 상지지체 (4급 ~ 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없음
	하지지체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없음
뇌병변장애	중증 뇌병변 (1급 ~ 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없음
	경증 뇌병변 (4급 ~ 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없음
시각장애	1급 ~ 2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없음
	3급 2호 및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 문제지	의사진단서 1부
	3급 ~ 4급 5급 1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 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없음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확대 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5급 2호 6급	확대 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없음
청각장애	2급 ~ 6급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허용	없음
기타장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임신부	시험중 화장실 이용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해당없음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 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수학,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편이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이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이제공 대상여부, 증빙서류 및 편이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이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인터넷원서접수 시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편이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장애등급 사실여부 별도 확인 후 편이제공 결정)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불허함. (다만, 시험시간이 연장되어 140분을 초과하는 경우와 임신부로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되, 화장실 이용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
5.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세종시청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44-300-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7년 10월 25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5년 10월 25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2017년도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기술직군 분야 -

〈 자격증 가산비율 〉

※ 공고문에서 안내한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은 제외

구 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기술직군 분야

직 령 류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